

# 하남시 체육시설 이용약관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하남시와 하남도시공공간 대행사업 협약을 통해 관리·운영 중인 체육시설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(이하 “회원”)와 센터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체육시설” 이라 함은 하남시에서 설치하여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(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, 풍산멀티스포츠센터 등)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“이용자” 라 함은 개인연습, 경기연습,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, “이용료” 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- “회원” 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서비스” 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- “등록일” 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.
- “이용일” 이라 함은 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(환불)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- “개시일” 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시작일자 (매월 1일)를 말한다.
- “관내” 라 함은 하남시 거주자, 하남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말한다.

### 제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- ① 약관은 센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, 구두설명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# 제4조(규정 외 준칙)

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, 기타 관계법령에 준한다.

## 제2장 권리와 의무

#### 제5조(센터의 의무)

- ①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단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- ② 센터는 회원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,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,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.

#### 제6조(회원의 의무)

-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②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- ③ 회원은 등록 및 입장 전에 건강상 유무, 이상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따른 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 센터에 건강상 이상 유무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고 센터 이용 중 적발 시에는 [하남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위험 및 책임 포기에 대한 동의서]를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 이용 중 고지한 기저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사고 및 손해를 당한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- ④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
#### 제7조(회원의 권리)

- ① 회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센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.

## 제3장 회원가입 및 회원관리

#### 제8조(회원의 종류)

- ①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.
- ② “정회원”, “월회원”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로 센터와 이용 계약을 체결

한 회원이며, “준회원” 이라 함은 홈페이지 혹은 각 센터 안내데스크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등록하고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.

- ③ “일일회원” 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.
- ④ “신규회원” 이라 함은 센터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,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.
  - 1. 1개월 이상 미등록 후 재 가입자
  - 2. 환불 후 재 가입자
  - 3. 재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⑤ “기존 회원”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계속적으로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### 제9조(회원의 자격)

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하남시 체육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.

### 제10조(회원의 자격제한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  - 2. 인화물질 등 체육시설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자
  - 3. 심신질환 및 지병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센터가 판단한 자
  - 4. 타인에게 회원증 대여 또는 무단 양도, 양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
  - 5. 싸움,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(수업)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 강사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(구두 또는 서면)를 받을 경우
  - 6. 회원등록 또는 일일입장권을 지참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한 경우 (부정입장에 관한 사항)
  - 7.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제반시설 이용 시 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
  - 8.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,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할 경우
  - 9.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,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10. 무단 타 업장 시설이용으로 타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
  - 11. 회원의 월 수강내역 외에 수업을 무단 수강한 경우
  - 12. 직원에게 불손한 언어나 욕을 사용한 경우
  - 13. 프로그램 및 공중 이용시설에 과도한 복장 및 수업에 방해되는 복장을 한 경우
  - 14. 기타 약관 및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
- ②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### 제11조(회원모집)

- ① 회원 모집방법은 기존 회원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잔여자리(결원)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사전접수 후 추천하여 모집한다. 단 잔여자리(결원) 추천(대기자 포함) 미달 시는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.
- ② 회원 모집 시기는 기존 회원은 매월 13일부터 19일까지, 신규 회원은 19일부터 2일 뒤 2일 간 모집하며, 19일의 다음날이 주말인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2일 뒤, 19일의 다음날이 금요일인 경우 금요일부터 주말을 포함한 월요일까지로 한다. 잔여자리 신규 회원은 “하남시체육시설 홈페이지”에 공고 및 접수하며, 선착순으로 모집, 매월 신규접수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추천 및 당첨자를 발표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 신규 회원 등록은 당첨자 결과 발표일로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. 또한 재등록하지 않은 기존 회원은 신규 등록 절차에 따른다. 단,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.
- ③ 회원 모집방법 및 회원 모집 시기(시간)는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- ④ 회원 모집정원은 센터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12조(회원가입 신청)

- ①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,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준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하남시체육시설관리·운영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준회원은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. 단, 관내 거주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외 거주지로 적용한다.
- ③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(회원증 및 일일입장권)

- ①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, 체육시설 이용 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 및 일일자유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증 및 일일입장권은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경우 적발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시에는 센터에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.
- ④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. 다만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⑤ 일일입장권 할인 대상은 구매 시 증빙자료(신분증 등)를 제시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이용료

### 제14조(이용료)

- ① 이용료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요금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부과한다.
- ② 이용료는 월 이용료로 구분하며, 월 이용료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③ 이용자별, 체육시설별, 강습 프로그램별 할증 및 할인율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④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 데스크 및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.
- ⑤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

## 제5장 환불, 연기

### 제15조(이용료의 환불)

- ①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프로그램 개시일 전이면 전액 환불한다.
  2.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취소일 까지 이용일수 일할계산(30일 기준)공제 후 환불한다. 단, 강습 횟수가 정해진 프로그램은 횟수에 따라 공제 후 환불한다.
  3. 환불 신청 시 회원 본인이 센터 소정 양식 [별지 제2호 서식]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 신분증, 기 발급된 회원증,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  4. 환불금액은 당일을 제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 요청한 회원 본인의 계좌로 환불한다. 단, 회원 본인의 계좌가 없을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직계 가족 명의 계좌로 환불할 수 있다.
  5. 천재지변 및 유행병(코로나 등)으로 인한 휴관으로 인해 환불을 하게 될 경우 당해 연도에 환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.

### 제16조(연기)

- ①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연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연기는 회계연도 중 1회, 1개월에 한해 가능하다.
  2. 연기신청은 매월 1일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다.
  3. 연기 후 환불은 제15조에 의거 환불한다.
  4. 회원의 귀책사유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, 임의 결석의 경우는 연기 및 환불이 불가하며 단, 특별한 사유(사고, 천재지변 등)가 증빙될 경우는 연기가 가능하다.

## 제6장 시설 이용 및 기타

### 제17조(주차시설 이용)

- ① 각 센터의 부설주차장은 소관 운영지침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며,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및 견인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- ② 주차된 차량의 귀중품은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.

### 제18조 (운영시간 및 휴관일)

-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(월~금) 06시부터 22시까지, 토요일 07시부터 18시까지, 일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 데스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- ② 센터의 휴관일은 매월 첫째, 셋째, 다섯째 주 일요일이며(단,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한하여 휴관함), 공휴일 및 설 연휴, 추석연휴, 근로자의 날, 공사 창립기념일, 기타 공사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.
- ③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 휴관일 및 행정지시,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은 통상 10일에서 15일이며, 월 회원은 이 기간에 대하여 보수공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휴일에 일수만큼 보장할 수 있다.

### 제19조(안전사고 및 분실사고)

- ① 수업 중 강사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은 센터에 있다.
- ② 병력을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으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,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③ 센터 안전사항 준수 위반 또는 회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하여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회원의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,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센터는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- ⑤ 센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(물)에 의해 회원의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.
- ⑥ 센터 내에서 부주의로 인한 분실물에 대해서는 한 달간 보관하고 1주간 센터 내 공고 후 폐기 처분하고, 분실물 및 폐기 처분한 물품에 대한 배상 및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당사자에게 ‘하남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위험 및 책임 포기에 대한 동의서’를 작성하게 하고 이용 및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  1. 눈병, 피부병, 전염성 질환자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(대·소변 조절능력이 어려운 자)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

2. 음주한 자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
3. 심장질환, 고혈압 등의 환자, 신변처리 및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 자, 혼자 거동이 어려운 자는 센터 관계자, 안내 데스크, 강사 등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,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입장 및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4. 외관상 심신이 매우 허약하여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고객은 의사 등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5. 미취학 어린이는 동성 성인 보호자와 같이 입장하여야 하며, 키 100cm 이하의 경우 부모가 동반하여도 안정상의 문제, 소음, 대·소변의 문제 등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6. 수영장 및 각종 업장별 안전수칙 등 센터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퇴장 조치할 수 있다.
7. 헬스장의 경우 센터 내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초·중·고등학생 이하는 부모 동반이여도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8. 오토바이, 킥보드, 드론, 전동차등 타인에게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